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윤후덕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7253호)

2025. 2.

외교통일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곽현준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참고사항	2
IV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제안자 : 윤후덕의원 등 10인

2. 제안일자 : 2025년 1월 6일

3. 회부일자 : 2025년 1월 7일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해외재난이 발생한 국가에 대한 해외긴급구호 등 인도적 지원은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개발도상국의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무상 또는 유상으로 제공하는 국제개발협력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을 근거로 시행되고 있음.

그러나 OECD 개발원조위원회가 분절된 인도적 지원과 개발협력, 평화의 요소를 결합하여 취약국의 상황을 효과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권고안을 채택함에 따라, 현재 두 법으로 나누어져 시행되는 인도적 지원과 국제개발협력을 연계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서 양자간 개발협력 중 무상협력의 범주에 포함되고 있는 ‘긴급재난구호’를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외긴급구호’로 적시하여 국제개발협력과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외긴급구호가 연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

2조제4호).

Ⅲ.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후덕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25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IV. 검토의견

개정안은 무상협력에 포함되는 ‘긴급재난구호’를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외긴급구호’로 하여 개발협력과 인도적 지원이 상호 유기적인 관계에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3. (생략) 4. 양자간 개발협력 중 “무상협력”이란 개발도상국에 대하여 현금·현물·인력·기술협력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u>긴급재난구호</u> 를 포함하며 상환의무가 없는 것을 말한다. 5. ~ 8. (생략)	제2조(정의) ----- -----. 1. ~ 3. (현행과 같음) 4. ----- ----- ----- ----- -- 「 <u>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u> 」 제2조제2호에 따른 <u>해외긴급구호</u> -----. 5. ~ 8. (현행과 같음)

1. 인도적 지원과 개발협력의 개념

인도적 지원이란 무력 충돌이나 분쟁과 같이 인위적으로 발생한 재난과 자연적으로 발생한 재해 상황, 그리고 그 직후에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국제적 지원 활동을 의미함.¹⁾

1) 김영완, 정진문, 이진영, 김효정, 김경민. (2020). 한국 ODA 이행에 있어 인도적 지원-개발-평화간 연계 (HDP Nexus) 실행 방안 연구. 한국국제협력단, 7쪽

UN은 국제개발협력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음. 첫째, 개발도상국이 자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기준을 적용하고자 할 때 이를 지원하는 것, 둘째, 개발도상국이 국제적 차원의 심각한 불평등을 극복하기 위하여 경제를 개발하고 복지를 향상하기 위해 수행하는 정책을 지원하는 것, 셋째, 개발도상국이 국제사회 내 공공재 공급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임.²⁾

2. 인도적 지원과 국제개발협력의 관계

UN과 세계은행을 중심으로 국제사회에서 인도주의, 개발, 평화 간 연계성 논의가 계속되어 온 가운데, 2019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³⁾ 고위급회의에서 인도적 지원, 개발, 평화의 통합적 접근법인 ‘인도적 지원-개발-평화 넥서스(Humanitarian-Development-Peace Nexus, 이하 HDP Nexus)’에 관한 OECD DAC 권고안이 채택됨.⁴⁾

HDP Nexus는 인도적 지원, 개발, 평화구축의 세 부분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상이한 활동 방식과 재원조달 방식을 상호 조율하여 하나의 공동 성과를 이룩하도록 연계·협력하는 방식임.

즉, 인도적 지원과 국제개발협력은 상이한 개념이기는 하나, 상호 유기적인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음.

2) 위의 글, 8쪽

3) OECD의 하부기관으로 개발도상국의 개발원조 문제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며 선진국의 원조정책의 조정과 전략 결정을 하는 기관임.

4) 위의 글, 19쪽

3. 한국의 HDP Nexus 이행

OECD DAC는 2018년 동료검토에서 “한국은 인도적 지원의 변화하는 성격을 반영하고, 한국의 인도적 지원, 평화유지 노력 및 개발협력이 일관되고 상호 보완되도록 하기 위해, 인도적 지원 전략을 개정하고 관련 법률의 적용 범위를 검토해 보아야 한다.”라는 권고를 하였음.

동 권고를 바탕으로 한국은 「2025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에 ‘HDP Nexus 강화’에 관한 목표를 설정하는 등 HDP Nexus를 이행하려는 노력을 시행 중임.

4. 개정안에 대한 검토

개정안은 윤후덕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⁵⁾에 따른 ‘해외긴급구호’와 동 법률에 따른 ‘무상협력’의 개념을 연계하려는 것임.

윤후덕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외긴급구호’의 범위를 해외재난에 의한 피해의 예방까지 확대하려는 것으로, ‘인도적 지원’이라는 용어를 직접 사용하지는 않았으나 ‘해외긴급구호’에 있어 ‘인도적 지원’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음.

5) 의안번호 제7253호

<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7254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해외긴급구호”란 <u>해외재난에 의하여 발생한 피해의 감소·복구 또는 인명구조·의료구호 등 정부 차원에서 피해국을 긴급히 지원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u>	제2조(정의) ----- -----. 1. (현행과 같음) 2. ----- <u>해외재난에 의한 피해의 예방·감소</u> ----- ----- -----.

즉 ‘무상협력’과 ‘해외긴급구호’를 연계하려는 개정안은 ‘국제개발협력’과 ‘인도적 지원’의 연계를 강화하는 한국의 HDP Nexus의 이행 노력과 맞닿아 있는 것으로 그 취지가 타당함.

다만, 개정안의 경우 ‘개발’의 범주 안에 ‘인도적 지원’이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 앞서 살펴본 인도적 지원과 개발의 개념에 따르면 양자는 명확히 포함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⁶⁾이 있으며,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하는 ‘무상협력’의 정의에 해외재난 피해국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을 포함시키는 것은 다소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외교부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어느 정도 공감하나, 개발도상국이 아니더라도 재난 등으로 인도적 수요가 발생한 경우 인도적 지원을 실시해 온바,⁷⁾ 동 용어를 일률적으로 대체하는 것은 현실과 다소 부합하지

6) HDP Nexus 또한 양자의 ‘연계’와 ‘상호 보완’에 초점을 두고 있음

않는 측면이 있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 6788-5264